

1992년 2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2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개의

○ 발언자:

- 고구레 야마토(木暮山人) 의원(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
- 이토 히데코(伊東秀子)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정부위원(외무성 조약국장, 외무사무차관, 주미대사,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
- 아리마 다쓰오(有馬龍夫) 정부위원(외교관, 네덜란드 대사, 독일 대사, 일본 정부 대표로 중동조사회 이사장)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대장성 관료, 정치가,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 장관, 중의원 의원,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내각관방장관, 부총리, 대장대신, 우정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자민당 총재)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국무대신(외무관료, 정치가, 자유민주당 소속. 방위청 장관, 내각관방장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간사장, 후쿠오카 시장, 일본 중국우호협회 회장·명예회장)
-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국무대신(정치가,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중의원 문교위원장, 문부대신, 노동대신, 중의원 운영위원장, 법무대신,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방분권개혁), 민주당 부대표,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 중의원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장)
- 쓰쓰이 노부타카(筒井信隆)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국무대신(세무사, 정치가, 중의원 의원, 대장성·농림수산성·후생성 장관, 부총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61X00419920219&spkNum=237¤t=37>

○ 해제(개요 및 특징)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중군위안부**에 당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논증하는 이토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 집요한 이토 의원의 추궁에 정부 각료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 또한 이토 의원은 청구권 협정에 의한 일괄 타결이라는 법적 책임 이전에 전시 여성들에게 가해진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일관계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역설함. 그러나 정부 각료들은 사실조사와 소송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종래의 미온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뿐, 좀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음. 참고로 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출판사는 한 곳밖에 없음이

드리났음.

○ 주요 내용 번역

▷ 이토 위원 “(전략) 다음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서는, 1월에 미야자와 씨가 방한하셔서 일본국의 총리로서 사죄하신 그 성의에는 저도 크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보상이 없다는 데 대해 한국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저도 포함하여 역시 비참한 실태, 종군위안부들의 실태를 생각할 때, 양심과 성의가 매우 문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정부는 일소공동선언의 청구권 포기 문제에 관해, 포기한 것은 국가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외교보호권¹⁾으로, 국민 개인의 소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즉 지금 종군위안부분들이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녀들이 개인으로서 일본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그것은 조금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도 좋다는 것이네요.”

▷ 이나이 정부위원 “답변드립니다.

이른바 조약상에서 청구권 포기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는 것은 이전부터 여러 기회를 통해 정부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략)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제1조에는 이른바 경제협력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일한 양국 혹은 양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약간의 예외, 즉 이 협정에 의한 청구권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전후 통상적인 일한 간의 협상에 기초한 재산권 이므로 종군위안부 같은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략)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의 청구권은 무엇인가인데, 이것은 클레임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같은 청구를 제기할 지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외교보호권의 포기이므로, 개인이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이토 위원 “재판에서 청구할 권리, 즉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리는 한국에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

1) 외교보호권 : 외교적 보호권.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 본 국민의 국가가 그 국민을 대신해서 가해국에 책임추궁을 할 권리를 뜻함.

겠다는 것을 양국 정상회담 중에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한기본조약」의 체결 단계에서는 군의 관여는 전혀 없었고 민간업자가 제멋대로 끌고 갔다는 사실 하에서 체결되었고,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그 사실에 기초하여 미야자와 총리가 사죄했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성의를 어떻게 표할 것인가, 즉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현재의 **중군위안부**에 관한 군의 관여에 대해 총리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방한 단계에서는, 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사실인정 하에 사죄하셨겠지만, 그 후 저는 2월 2일에 47점의 새로운 **중군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고, 어제 다시 9점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서는, 총리의 방한 전 발견한 5점의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총리는 새로운 자료에 기초하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나아가 그 보고에 기초하여 어떠한 사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그것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각 성청이 하고 있으므로 관방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 **가토 국무대신** “정부 측에서도 6개 성청을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면밀히 수행하고 있고, 몇 가지 자료를 이쪽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 상황에 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아리마 정부위원** “지적하시고 언급하신 자료가 그 후에도 나왔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총리께서 한국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중군위안부** 모집이나 위안소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 계속해서 이들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토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인정,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들리는군요.”

그러면 저는 자료에 기초하여, 시간도 없으므로 제가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오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 1>을 보면 1944년 5월 나카야마경비대(中山警備隊)라는 곳에서 낸 「군인구락부(軍人俱樂部) 이용 규정」입니다. 2조를 봐주십시오. ‘제2군인구락부라 칭하는 곳은 **위안소로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제3조에는 ‘부대 부관(副官)은 군인구락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감독 지도하여 원활하고 확실한 운영을 하도록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부대 소속 의관(医官)은 군인구락부의 위생시설 및 위생시설의 실시 상황과 가족·가업부(稼業婦)²⁾·사용인의 보건·조리·식단 등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부

대 소속 주계관(主計官)³⁾은 군인구락부의 경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이 모든 것을 보면 위안소에 대해서는 군이 전면적으로 통괄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표(付表)가 붙어 있는데, 맨 마지막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2군 인구락부 이용시간표라든가, **위안소**의 요금표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교와 준사관(准士官), 군속, 이런 식으로 나뉘어 요금은 물론 시간도 군에서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두 번째의 <자료 2>를 보시면, 이 <자료 2>의 두 번째 페이지의 1942년 3월 12일 자료 타이완군(台灣軍)의 사령관이 육군대신 앞으로 보낸 전보입니다. 그 내용은 '보르네오로 갈 **위안토인(慰安土人)** 50명은 가능한 한 파견해 달라는 남방총군(南方總軍)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타이완의 **위안부** 50명을 가능한 한 파견해 달라는 남방총군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니 육군성은 그 앞에 쓰여 있는 경영자 3명의 도항(渡航)을 인가해달라는 신청의 전보입니다. <자료 2>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 전보에 대해 육군성의 부관이 타이완군의 참모장 앞으로, 조금 전의 전보의 건은 인가한다는 답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명백히 군이 육군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파견에서부터 나아가 경영, **위안부**들의 위생관리, 경리까지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 2>의 세 번째입니다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1942년 6월 13일에 타이완군의 참모장이 육군성의 부관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보르네오에 파견한 **특종위안부(特種慰安婦)** 50명과 관련하여 현지 도착한 후의 상황을 보면 인원이 부족하고, 가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20명의 증가를 요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컨대 50명을 요구해서 보냈지만 부족하여 20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니 이 20명 증원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전문(電文)입니다.

이에 대해 여쭙자면, 아마도 총리는 방한하기 전에는 보시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토록 명백하게 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실에 관해서 말입니다.”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방한하던 단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이미 입수했던 각종 자료와 정보 등으로 방한할 당시 말씀드린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그러한 점을 한층

2) 가업(稼業) : 가업은 생업 또는 직업을 말한다.

3) 주계관(主計官) : 경리 및 회계를 관장하는 장교 또는 관리.

더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그때와 다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 ▷ **이토 위원** “당시부터 이처럼 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인식은, 그 당시 일본정부가 이와 같은 **중군위안부** 모집 및 **위안소** 설치, 경영에 관해 관여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이런 인식이므로, 그러한 인식은 지금도 대체로 같습니다.”
- ▷ **이토 위원** “와타나베 외무대신에게 물겠습니다. 와타나베 외무대신은 1월 14일 밤 TV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능동적인 관여의 여부는 모른다, **위안부**의 수를 세어보거나 **위안소** 설치를 허가했다거나 하는 관여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조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이런 발언이라면 너무나도 부수적인, 모집에 조금 도움을 주었다던가, 그와 같은 관여일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사실을 보면, 그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1월 13일 당시는 몰랐습니다만, 그와 같은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은 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이토 위원** “와타나베 외상의 매우 성실한 답변으로. 당시에는 몰랐지만, 군이 관여했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매우, 이미 전면적이었던 게 더욱 명백해지는군요.

그것은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1938년 3월 4일에 나온 육군성 병무과(兵務課)라는 곳의 문서입니다. 여기 모집에 관한 건에서 육군성이 현지 헌병과 경찰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계하도록 파견군도 관여하라고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결재한 분이 이마무라 히토시(今村均), 이후 육군 대장이 되었고, 이분이 쓴 『이마무라 히토시 회고록』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책을 저도 이번에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안소**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분이 결재하였고, 더 나아가 당시 육군의 차관인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라는 분인데, 이분의 결재인(決裁印)도 있습니다. 우메즈 씨라는 분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참모총장이었던 분으로, 일본이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를 조인할 때 군 측에서 조인을 한 분입니다. 이미 1938년 당시부터 이런 형태로 군의 고위층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키나와 히라야마 부대(平山隊)라는 곳에서 나온 「**평작명(平作命) 제5호**」라는 문서에 따르면, **위안소**가 부족해져서 증설을 위해 1월 16일부터 10일간의 예정으로 병사 숙소(兵寮)를 축조했다, 이를 위해 일부 병력을 차출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오늘 배포한 <자료 3>인데요, <자료 3>의

표지를 포함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군의관이 **위안부분**의 매독을 검진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검사연인원(檢査延人員)’이라는 데에 ‘내지인(內地人)’⁴⁾, , ‘반도인(半島人)’⁵⁾, ‘중국인’이라는 형태로, 반도인 즉 조선반도 사람들에게, 난징(南京)이나 우후(蕪湖)·진탄(金壇)·진장(鎮江) 같은 곳에서 군이 **위안부**로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심한 민족차별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제 입수한 자료 가운데 「1938년 3월 상주주둔간내무규정(常州駐屯間內務規定)」, 그 제9장에 「**위안소** 사용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자료로 배포하지는 않았습디만, 거기에 **위안소**의 요금이 적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1인당 1시간을 한도로 함’, 지나인(支那人)⁶⁾은 1엔, 반도인은 1엔 50전, 내지인은 2엔, ‘이상은 하사관, 병사로 하고 장교(준위 포함)는 8배 금액으로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요. 위원장,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 ▷ **나카야마 위원장대리** “예, 그러시죠.”
- ▷ **이토 위원** “이런 형태로, 식민지 지배를 해온 조선반도의 여성을 강제로, 군대의 취사나 세탁, 심부름이라던가 혹은 무기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연행 해온 여성들에게 **위안소**에서 하루에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라는 일본 병사를 상대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요금은 내지인, 반도인, 지나인으로 차별한, 상당히 비인도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만, 왜 이러한 군 **위안소**를 설치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 **가토 국무대신** “아무래도 오래전 이야기라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만, 발견된 자료들을 읽어보면, 당시 전선(前線)에서 군이 **위안소**의 관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 **이토 위원** “그 필요한 상황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 **가토 국무대신** “당시 일본군이 주둔해있던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군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군의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도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성적(性的)인 위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예컨대 강간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군에서 나와, 현지 군에서 요청한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이토 위원** “지금 답변은 대단히 소극적인데, 아마도 말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과거의 전쟁은 성전(聖戰)이었다는 식으로 일본정부가 말해왔기 때문에 말

4) 내지인(內地人) : 일본인. 당시 일본은 행정법상으로 일본 땅을 ‘내지(內地)’, 그 외의 식민지 지역 등을 ‘외지(外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준하여 ‘내지인’, ‘외지인’이라고 불렀다. 이는 일제가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자신들은 서양의 ‘식민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내부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반도인(半島人) : 외지인(外地人)인 조선인에 대한 차별어.

6) 지나인(支那人) : 중국인에 대한 차별어.

하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수한 문서에는 확실히 나와 있네요.

193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보병 제9여단(旅團) 진중일지(陣中日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938년 6월 27일에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 참모장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라는 사람이 육군 방면군 각 부대에 지시한 통첩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북지나방면군 점거지 내의 치안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치안 회복의 진척은 지지부진하다. 그 주된 원인은 ‘주민에 대한 군인과 군대의 불법행위가 주민의 원한을 사서 저항의식을 부추기고, 공산 항일분자의 민중 선동의 구실이 되어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중략하면 ‘일본 군인의 강간 사건이 전반에 전파되어 실로 예상 밖의 심각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군이 발행한 이 문서에, 일본군의 강간 사건이 점령지 전반에 확산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최대한 빨리 성적 위안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여, 설비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금(禁)을 침(侵)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 이처럼 군 참모장이 강간이나 방화 같은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미 만연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단속과 동시에 이제는 위안소를 만들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것을 통첩으로 보낸 것이군요. 여기서 일본군이 성전(聖戰)이라고 말하는 태평양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거듭했는지 그 내막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군의 발상이 인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군의 문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1940년에 나온 「지나사변(支那事變)⁷⁾의 경험에서 본 군기 진작 대책」이라는 문서입니다. 육군성 부관의 문서에도, 가와하라 나오이치(川原直一)라는 사람이 낸 문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지나사변의 내용만 소개하면, 약탈, 강간, 방화, 포로 참살 등 황군(皇軍)⁸⁾의 본질에 반하는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국내외의 반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비인도적인 목적에서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문서는 가나자와대학(金沢大学) 의학부 교수인 당시 군의 군의관 대위였던 하야오 세키오(早尾席雄)라고 읽나요? 이분의 『전장(戰場)에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하이사변(上海事變)⁹⁾ 이것은 1937년의 무렵인데, 강간이 매우 늘어났다는 것과 중국에서 직업여성(商売の女性)과의 접촉으로 군대에性病(性病)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지(内地)나 조선반도의 소녀들, 여성들을 데려와서性病을 예방하고, 그 관리도 군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7)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말함.

8) 천황이 통솔하는 군대

9) 여기서는 1937년 8월에 일어난 제2차 상하이사변(上海事變)을 가리킴. 같은 해 7월의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에 이어서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이처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본질을 폭로하는 형태로 이번에 **중군위안부**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법적인 책임 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일한 관계의 구축이나 국제사회의 신의를 바라는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보아 실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사실에 성실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셨던 분들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성의를 이런 형식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자발적으로 보상을 자청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일한 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대략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들었으며, 유감스럽지만 그러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고, 원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대통령께도, 한국 국민에게도 사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 역시 지금 저희 쪽에서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과거 사례에 관해 좀 더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소송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 등의 경위도 보면서 생각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갑자기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 ▷ **이토 위원** “(전략) 재판 경위를 지켜본다는 것은 대단한 책임회피입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법의 문제, 시효(時效)의 문제, 또 **위안소** 안의 끔찍한 실태를 중언(重言)하지 않으면, 지금 원고(原告)가 된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인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조차 아직 총리는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략)

- ▷ **이토 위원** “저로서는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적용되는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녀들을 구제하는 길은 이제 99% 정치적 결단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책임회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왜 그녀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연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시다 세이지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시 중에 야마구치현(山口県) 노무보국회(勞務報国会) 시모노세키지부(下関支部)의 동원부장(動員部長)이었던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천여 명의 조선인 여성을 시모노세키에서 **중군위안부**로 강제연행했습니다.

그때의 실태를 보면, 우선 10명이나 15명이 요시다 씨의 부하인데 이들이 우선 조선반도로 출장을 갑니다. 총독부 소속의 50명 또는 100명가량의 경관(警官)과 함께 마을을 포위하고 여자들을 도로로 내뺍니다. 목검을 휘둘러 젊은 여성을 때리고 발로 차고 트럭에 싣습니다. 한 마을에서 3명, 10명을 연행해서 경찰의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예정된 인원인 100명 내지 200명이 차면 시모노세키

로 옮긴 후 시모노세키에서 필요로 하는 중국이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仏印), 혹은 필리핀 등 각지로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를 안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차버리고 여성을 연행해 갔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재판 중인 원고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원고 A 씨의 경우는, 아가씨, 돈 벌러 일본에 가지 않을래, 구라시키(倉敷)의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면 돈도 벌고 재봉틀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강제로 부두로 끌려가 배에 태워졌다. 그때부터 더 이상 자유는 없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군 수송선에 실려 라바울¹⁰⁾에 도착했고, 라바울에서 교회로 끌려간 후, 또래 여성 20명 정도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싫다고 거부하면 맞았다. 더는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이 원고분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1월 14일, 15일, 16일 일한 문제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중군위안부 110번’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3일 동안 230건, 세 대의 전화가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접수된 이야기 중에도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구 조선 국민학교의 전직 교원이었다는 분 중에는 1943년 경 6학년 여자반을 맡고 있었을 때, 교장의 명을 받아 여학생 8명을 정신대원으로 선별해서 보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급적 체격이 좋고 집안이 비교적 가난한 사람을 고르라는 지시가 특별히 있었다고 하는군요. 당초에는 비행기 부품 작업원 모집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뒤에 이것이 위안부라는 것을 듣고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심지어 구 해군의 소년 비행사 출신의 증언 중에는 1944년 4월 중순 남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동료들과 시모노세키의 여관에 묵었는데, 조선인 젊은 아가씨 30~40명이 울고 있어서 사정을 물었더니, 정신대로 비행기를 만들거나 대포의 탄환을 만들어 일본인과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기꺼이 일본에 왔는데, 이제 남쪽으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게 생겨서 울고 있다는 증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연행 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 **아리마 정부위원**“지적하신 요시다 씨 저서의 존재라든가, 지금 소개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부터 요청에 따라 정부로서는 내각관방이 조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른바 조선반도 출신 중군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왔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일은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

10) 라바울(Rabaul) :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섬에 있는 도시. 1910년 독일이 남태평양 식민지 개발의 거점으로 건설한 항만 도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기지가 되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는 이 단계에서는 이를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 ▷ **이토 위원** “강제연행의 실태 가운데 **위안부**를 어떤 식으로 연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여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스스로 **위안부**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벌써 십수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야자와 총리께서는 한국정부에 성실한 조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위안부**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요시다 세이지 씨를 국회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나카야마 위원장 대리** “이토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후반 이사회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중략)

- ▷ **이토 위원** “지금 정부는 9만여 명의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를 공표하였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라는 단체의 조사에서는 14만 1,916명의 명부를 공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 「조선인 귀국자 초기명부(初期名簿)」라는 곳에는 165명 중 147명의 여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중군위안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자료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보존된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1945년 10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0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또 하나의 공안(公安) 문제는 일본군이 오키나와에 남겨 둔 **위안부**들이었다. 그녀들이 통제구역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군은 오키나와 내의 이 여성들을 모두 집합시켜 한국에 강제로 귀국시킬 것을 점령 당국에 보고하고, 귀국까지의 식료 등의 편의를 봐줄 것을 의뢰했다.’, 이 외에도 40명 정도가 모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1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키나와, 기타 류큐제도(琉球諸島)에서 모인 한국 **위안부**는 무사히 귀국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와 함께 147명 여성의 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리스트의 사본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의 주소와 성명이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 정말로 실태조사를 성실하고 조속히 하고자 한다면, 이 명부에서 주소와 성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 **아리마 정부위원** “지적하신 자료에 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자료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뭐랄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도 관계되는 것이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 ▷ **이토 위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사를 굉장히, 그것은 처리방식의 문제이고, 우선 열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조사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강제연행으로 데려온 1944년 이후는 조선총독부의 노동부(勞働部)가 주도적으로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 등을 보내왔으니, 조선총독부가 매년 제국의회(帝國議會)에 보고자료를 통해 동원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문헌에서 찾았습니다. 정부가 아마도 이 총독부가 의회에 보고한 설명자료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¹¹⁾ 이것을 공표하여 그중에서 강제연행된, 미국의 폭격자료 속에서 발견된 강제연행 인원이 약 66만 명이라고 하면서도, 강제연행 명부가 아직 9만 명밖에 확인되지 않은 허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독부가 의회에 보고한 설명자료에서 강제연행의 명부,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여성 **중군위안부**로 생각되는 분들의 자료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해주시지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 **아리마 정부위원**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 성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다면 종래대로 공표할 생각입니다.”

(중략)

- ▷ **하토야마 국무대신** “총리의 이번 국회 연설, 그 이전 한국에서의 정책 연설, 또는 작년 가이후 전 총리대신의 싱가포르 연설은 대체로 다 같은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82년 당시 총리가 관방장관이었을 때 하신 관방장관 담화와 같은 관점에서 이른바 「교과서 검정기준」에도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을 도입해 간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관계, 이웃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나 폐를 끼친 일에 대해 일반인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군위안부** 문제도 분명 출판사 한 곳에서만 고교 과정의 역사교육에서 일본사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로서는 총리의 지난번 연설 등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리가 한국에 가서서 그러한 대화를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부성의 사카모토(坂元) 초중국장(初中局長)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주관 부·과장회의 등에서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다만 교과서에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본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집필하여 발행하는 과정에서 검정(檢定)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항을 다룰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집필자와 발행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11) 당시 조선총독부의 각 부처는 해마다 「제국의회 설명자료」라는 형식으로 부처 별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가 현재 남아 있다.

(중략)

- ▷ **쓰쓰이 위원** “(전략) 전후책임, 전쟁책임 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의 전후책임에 대해서는 조약 등으로 대략 정리되었거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 의원이 말한 **중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이러한 개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혀 끝내지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은 채 PKO 라든지 국제공헌이라든지 이런 말을 해도 특히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일단 아시아 국가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 당시 일본은 아직 현재만큼의 국력이 없었지만, 국력을 다하여 성의껏 각국과 조약을 맺어 평화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배상을 포기한 중국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 국가의 개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 위해 물질·인적·기술적 원조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성의를 다해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중략)

- ▷ **쓰쓰이 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약 등으로 국가 간 전후 보상은 끝났다고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보상과 개인 보상은 전혀 취지가 다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국가 간의 보상이나 전쟁배상이 아니라, 개인 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이것은 개인 보상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인데, 대체로 어디서부터 선을 그을 것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일본정부가 개개인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조약으로 완전히 일체 종료되었습니다. 청구권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매우 비참한 것이었고, **위안부** 문제 등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정말로 가엾은 처지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정심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디에 선을 긋는 것이 좋을지, 한국뿐만 아니라 타이완도 중국도 (위안부가-역자) 있었다는 자료가 나왔고, 일본에도 있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실은 정말로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는 무엇인가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며, 이후 내각에서 상담해가고자 합니다.

